사회보험제도 가입 안내

본인이나 가족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도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 ◆귀하께서 가입하셔야 하는 의료 보험·연금의 가입 절차는 근무하 고 계신 회사가 의무적으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 해 회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의료보험 ·연금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으 며, 의료보험·연금에 아직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사무소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연금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 ◆귀하께서 가입하셔야 하는 의료 보험·연금 가입 절차는 거주하고 계신 시·구·정·촌 사무소의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담당 창구 에서 직접 진행하시게 됩니다.
- ※무직 혹은 유학생·취학생 등으로 주 28 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계신 분은 일반적으로 여기 에 해당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계신 시·구·정·촌 사무소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 상담하십시오.

※연금사무소에서 일본어 외에 다른 언어로 상담하실 경우에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75 세 이상인 경우에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 하시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계신 시·구·정·촌 사무소의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담당 창구에 상담하십시오.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

◆<u>어느 한 가지의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에</u>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적용 사업소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여기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이나 사망시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사업소란 법인의 사업소, 종업원 5인 이상인 개인 사업소를 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관하여

- ① 75세 미만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
- ② 75세 이상의 외국인

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결정된 체류기간이 1 년 이상인 분(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분을 포함)은 국민건강보험(①에 해당하는 분) 또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②에 해당하는 분)가 적용되어, 가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면 질병이나 부상시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u>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실 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u> <u>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u> <u>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u>

3. 후생연금보험·국민연금에 관하여

외국인 여러분에 대해서도 적용 사업소에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후생연금보험이 적용되므로 여기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용적인 사용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노령, 장해, 사망 등의 경우에 각각 노령연금, 장해연금(또는 장해수당),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일본 출국 후 청구 절차를 거쳐,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